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9일, 김선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토석류 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임도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시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

성, 환경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타당성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설치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다가 2022년도부터는 직접사업 또는 민간위탁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중 민간위탁 방식의 경우 산림청 소관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수의계약을 통해 2022년도 5건(계약액 7억 3,600만원) 및 2023년도 6건(계약액 20억 4,400만원)을 수탁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토석류방지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도에 관한 업무로는 “임도사업 관련조사, 임도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임도기술에 관한 국제교류, 임도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만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임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에서 임도가 산사태 취약지역의 유역을 지나고 있음에도 해당 임도를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입법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타당성 평가를 평가위원회 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타당성 평가를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전문기관의 지정 주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 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전문기관 도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